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7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위성락·권칠승·위성곤

임호선 · 신영대 · 정을호

한정애 · 김태선 · 이기헌

이훈기 • 박지원 • 이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을 통해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기로합의하였음.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 호로 개정된 것)」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2023. 9. 26. 헌법재판소는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 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으로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장을 신설하여 접경지역에서 전단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남 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 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 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 거부에도 전단등을 살 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제5장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전단등의 살 포가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 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 변경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여부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3(해산 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등의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전단등의 살포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4조제1항 각 호의"를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제6장(종전의 제5장)에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전단등을 살 포한 자
- 3.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전단등을 살포한 자

제27조(벌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등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 ② (생 략)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u>같다.</u>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전단등
	의 살포가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신 설>

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 고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여부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4조의3(해산 명령 등) ① 통일 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수리 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등의 살포를 강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 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지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 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신설>

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전단등의 살포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장 벌칙

<u> 게 U 8 </u>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제</u>]
호 및 제2호를
레24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신 설>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자
- 3.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전단등을 살포한 자

제27조(벌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고 전단등을 살포한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